

#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규제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이중규제된 내용을 완화하는 한편,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간차원의 홍보·계몽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으로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개정법률(안)』을 마련 14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 완화

- 마약류 취급자등의 업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제조업자등이 마약등을 제조(제제, 소분)시 매번 미리 그 원료 사용량 등에 대한 허가를 받고, 제조한 후에도 매번 생산완료 보고하던 것을 완화하여 사후보고만 하도록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등이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를 사용할 때마다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던 것을 사후보고로 완화하였으며, 마약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가 매월 그 판매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던 것을 폐지하였음.
- 취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준조세 경감의 일환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봉합증지 금액을 폐지하고 마약구입서 판매서의 교부 수수료를 폐지하였음.

□ 마약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위법행위 등 마약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2군, 3군)의 불법 소지·사용시 벌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마약 중독 판별 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형법에 맞추어 상향조정하였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법정단체화

- 민간부문의 마약남용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간차원의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과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마약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부는 1997년 4월 18일 국내·외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양질의 식품 개발촉진 및 국제기준·규격과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7년 7월말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강화

-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최초 단계로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검사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체대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검체 채취의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검체 채취방법을 식품별로 분류하여 검사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급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 이유식류 및 조제유류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
    - 이유식은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이유식원료는 방사선 조사처리를 금지하고 영양소중 나트륨 성분규격{(1mg/kg) 200 이하}을 신설하는 한편 코코아는 9개월 이상 영유아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가 먹기 좋게 함.
    - 조제유류는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일반 조제유류와 성장기(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조제유류로 구분하여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에 대한 규격과 원료 구비요건 및 제조가공 기준 등을 강화하여 국제규격과 조화시키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원료의 범위 등을 확대함.
  -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별 성분배합기준과 성분규격 자율화 및 위생규격 강화
    - 과자류와 분유류의 성분배합기준을 제조업소가 정하도록 자율화하고 과자류, 분유류 및 조미식품 등의 비중, 수분, 회분 등 성분규격을 삭제하거나 제조업소 자율기준에 따르도록 함.
    - 병원성대장균(0-157)에 대한 식품일반 규격을 설정하고 항생물질 등을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보완하는 등 위생규격을 강화함.
  - 수산물에 대한 위생처리기준 및 위생규격을 강화하고 관능검사에 의한 시험법 신설
    - 수산물 처리시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수산물에 대한 세균수, 대장균수, 총 수은, 납 등 위생규격을 신설함.
    - 휘발성염기질소에 의한 신선도 측정기준을 삭제하고 관능검사에 의한 시험법을 신설하여 검사시 외관, 색깔, 선별항목을 공통적용하고 수산물별(활어, 패류,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조품, 염장품 등)로 점수제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활력도, 선도 등을 판정토록 함.
  - 기타 무기물중 요오드, 비타민 D<sub>3</sub>, 비타민 K<sub>1</sub> 등의 미량성분
    - 시험법과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분석법 설정 등 일반시험법을 신설함.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캠페인 전개

- 보건복지부는 4월 ‘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4월 7일 제25회 ‘보건의 날’ 및 제 49회 ‘세계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루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4월 15일 10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실시함.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계획협회,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 10여 개 보건관련단체 임직원 그리고 연예인, 자원봉사자,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캠페인활동을 전개함.
-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보면, 각종 홍보팜플렛 배포, 성인병 가두 무료검진 실시, 고혈압·당뇨병 등 건강상담활동 및 헌혈운동 전개, 에이즈예방 사진판넬 전시회 개최, 결핵검진 및 상담 등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

##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매월 20일 정기 지급

-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금년 10월부터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에 정기지급하도록 하였음. 다만, 자치단체별로 매월 20일 이전에 정기지급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지역별 지급일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선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지급일을 같이 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생계비 지급일을 일시에 조정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가계관리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조정기간을 두어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당사자에게는 생계비 정기지급일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주지시켜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지금까지 생계비 지급일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전월 25일경부터 당월말까지 지급일이 다양하여 정기성이 없고 지나치게 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역별로 지급일이 달라 생활보호대상자들간에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앞으로 생계비 지급일이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를 매우 규모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 지급일의 차이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일선 행정기관은 거주지 변경시 발생하는 생계비 지급확인이 간소화되는 한편, 『생계비 지급일』이 정해짐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